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11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윤재옥·서천호·임종득
우재준·이인선·이주영
김종양·김정재·이종배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상근 의무가 없어 부재가 잦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대상이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재나 연락두절 등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①·② (생략)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u>단서 신설</u> >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 다만,</u> <u>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재나 연락두절 등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